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1)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재간접형] 12.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삭제>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삭제>
	⑨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⑩제3항 내지 제9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제4항 내지 제9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현행과 동일) 2. 제4항 내지 제7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⑨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17일 1)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석 추가)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95%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31%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삭제>
	11)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삭제>
	12)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수익자가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삭제>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6)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8)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삭제>
	(9)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

	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8)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9)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재간접형]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95%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31%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4)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별첨 1>
[변경 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 [주식혼합]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재간접형]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변경 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주식혼합]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국공채]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주요 변경내용

3)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4) 전환 대상 투자신탁명 변경
5)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6)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7)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8.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삭제>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삭제>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4.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⑨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⑩제3항 내지 제9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3. (생략) 4. 제4항 내지 제9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3. (생략, 현행과 동일) 4. 제4항 내지 제7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⑨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제 33 조(이익 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2월 17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17일 1)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2) 전환 대상 투자신탁명 변경 3)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4)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5)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8.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관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9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

	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수익자가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8)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신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삭제> (6)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9)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8)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	(9)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2월 1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9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4)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삭제>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별첨 1>
[변경 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주식혼합]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채권]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일드증권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수익을 추구

[변경 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주식혼합]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국공채]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201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홍성수 → 오현정)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4. 하나 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삭제> 1. 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 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나. "하나 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17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홍성수 → 오현정)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성수 (주석추가) 다.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삭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 투자대상**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삭제>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종합지수*9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매칭10년모투자신탁[채권]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종합지수*9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삭제>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는 [(KOSPI 지수*10%) + (CD금리 * 90%)]이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매칭10년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퇴직연금장기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8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0%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종합지수*90%) 주 2) 비교지수가 2009 년 1 월 1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10%) +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주2)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CD 금리 * 90%)]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KOSPI 지수*10%) + (CD금리 * 9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02월 16일까지는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종합지수*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비교지수 : (KOSPI*10%)+(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종합지수*9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매칭 10 년모투자신탁[채권]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10%)+(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종합지수*9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비교지수가 2009 년 1 월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비교지수: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10%) + (CD 금리 * 90%)]이었습니다. **2. 투자전략**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성수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석 추가)	**2. 투자전략** <삭제> <삭제> **3.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9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KOSPI 지수*10%) + (CD금리 * 90%)],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02월 16일까지는 (KOSPI*1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종합지수*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8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0%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8)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9)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삭제>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삭제>
	12.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삭제>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5.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6.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삭제>

	후에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⑨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⑩제3항 내지 제9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5. (생략) 6. 제4항 내지 제9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5. (생략, 현행과 동일) 6. 제4항 내지 제7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⑨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17일 1)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7.53%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30%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수익자가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8)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삭제> (6)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8)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

	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재간접형]	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9)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7.53%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30%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별첨 1>
[변경 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 [주식혼합]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채권-재간접형]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변경 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주식혼합]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국공채]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자[주식]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

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0)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11) 전환 대상 투자신탁명 변경
1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13)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14)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15)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삭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7.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8.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⑨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⑩제3항 내지 제9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7. (생략) 8. 제4항 내지 제9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7. (생략, 현행과 동일) 8. 제4항 내지 제7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⑨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2월 17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

	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17일 1)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2) 전환 대상 투자신탁명 변경 3)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4)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7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1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4)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하나 UBS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8) 하나 UBS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수익자가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삭제>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6)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8)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삭제>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	(8)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

	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재간접형]	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9)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가. 이익배분**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2월 1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위해 필요한 사항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73%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1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전환 대상 펀드>**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	**2. 전환절차 및 방법** **<전환 대상 펀드>**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

	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별첨 1>
[변경 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주식혼합]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채권]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스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마트리턴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변경 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주식혼합]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국공채]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자[주식]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형]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최근일자 기준 자료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원) (생략)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 하나UBS차이나듀얼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생략)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원) (업데이트) <삭제> <삭제>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생략)	(업데이트)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추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글로벌전술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코어셀렉션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펀드명 변경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보수율 및 선취판매수수료 인하
- 환매수수료 삭제
- 종류 A-E, C-E, C2, C3, C4, S 수익증권 삭제
- 참조지수 변경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02.17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글로벌전술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글로벌전술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A 수익증권 (생략) 2. 종류A-E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종류C1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4. 종류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5. 종류C3 수익증권 :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6. 종류C4 수익증권 :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7. 종류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8. C-F 수익증권 (생략) 9.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A 수익증권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2. 종류C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C-F 수익증권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0. 종류C-P 수익증권 (생략) 11. 종류 C-P2 수익증권 (생략) 12. 종류 W 수익증권 (생략)	 4. 종류 C-P수익증권(생략, 현행과 동일) 5. 종류 C-P2 수익증권(생략, 현행과 동일) 6. 종류 W 수익증권 (생략, 현행과 동일)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A-E 수익증권 3. 종류 C1 수익증권 4. 종류 C2 수익증권 5. 종류 C3 수익증권 6. 종류 C4 수익증권 7. 종류 C-E 수익증권 8. 종류 C-F 수익증권 9. 종류 S 수익증권 10. 종류 C-P 수익증권 11. 종류 C-P2 수익증권 12. 종류 W 수익증권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F 수익증권 4. 종류 C-P 수익증권 5. 종류 C-P2 수익증권 6. 종류 W 수익증권
제25조(판매가격)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의3(수익증권의전환)	(생략)	<조항 삭제>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생략) 제5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략) ②(생략)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생략)	①(생략, 현행과 동일)제5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②(생략, 현행과 동일)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28조(환매연기)	1. (생략) 제7영업일 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1. (생략, 현행과 동일) 제7영업일 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9조(보수)	[종류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C1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4.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C2 수익증권]	[종류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삭제> [종류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삭제>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C3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삭제>
	[종류C4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삭제>
	[종류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삭제>
	[종류C-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C-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삭제>
	[종류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0	[종류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종류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제40조(판매수수료)	제2항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④판매회사는 종류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2항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6% 이내 2. <삭제> <삭제> <삭제>

	한다. 1. 종류S 후취판매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⑥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 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삭제>
제41조(환매수수료)	(생략)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생략)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생략)	제4항 (생략, 현행과 동일)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글로벌전술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삭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A-E, C2, C3, C4, C-E, S C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삭제> C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A-E, C2, C3, C4, C-E, S C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삭제> C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17일 - 펀드명 변경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보수율 및 선취판매수수료 인하 - 환매수수료 삭제 - 종류 A-E, C-E, C2, C3, C4, S 수익증권 삭제 - 투자자문 내용 추가 - 참조지수 변경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C1 A-E, C2, C3, C4, C-E, S **나. 종류형 구조** 하나UBS글로벌전술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1 A-E, C2, C3, C4, C-E, S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C <삭제> **나. 종류형 구조**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 <삭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table>
<tr><td></td><td>나. 모집합투자기구
<별첨 1 참조></td><td>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별첨 1 참조></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table>
<tr><th>투자대상</th><th colspan="2">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50%수준</td><td rowspan="3">90% 이상</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40%수준</td></tr>
<tr><td>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td><td>10%수준</td></tr>
</table>
(1) 운용전략
2단계
(생략)
(예) 자산간 전략배분비중 ±15%수준

3단계
(생략)
(예) 자산내 전략배분비중 조절

(3) 참조지수 : FTSE All World Index * 50% + Barcap Global Aggregate Bond Index * 40% + Morningstar Global Long/Short Equity Index * 10%</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 rowspan="3">90% 이상</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
<tr><td>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td></tr>
</table>
(1) 운용전략
2단계
(생략, 현행과 동일)
(예) 자산간 배분비중 조절

3단계
(생략, 현행과 동일)
(예) 자산내 배분비중 조절

(3) 참조지수 : 글로벌 주식 인덱스[1] x 50% + 글로벌 채권 인덱스[2] x 20% + 글로벌 헤지펀드 인덱스[3] x 30%
1)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2) Bloomberg Barclays Global</td></tr>
</table>

	-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성과 비교를 위하여 상기 지수를 참조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 3) Hedge Fund Research HFRX Equity Hedge Index x 95% + Call 5% -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성과 비교를 위하여 금융시장 움직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롱숏전략 지수 중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수를 당 펀드의 전략배분 비중으로 가중하여 참조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C1 A-E, C2, C3, C4, C-E, S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오후 3시 이전 / 경과후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오후 3시 이전 / 경과후 (3) 환매수수료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C <삭제>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오후 3시30분 이전 / 경과후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오후 3시30분 이전 / 경과후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1. 종류 A, A-E, C1, C2, C3, C4, C-F, C-E, S, W 수익증권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2. 종류 C-P, C-P2 수익증권 : 없음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생략) 당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 시[오후 3 시] 이후에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7) (생략) 제 7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생략)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생략, 현행과 동일)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후에 (생략, 현행과 동일)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7) (생략, 현행과 동일) 제 7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생략, 현행과 동일)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1 A-E, C2, C3, C4, C-E, S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1% 이내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 <삭제>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0.60% 이내

환매수수료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이내(종류 A-E는 0.5%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C	종류 C-F	종류 W	종류 C-P	종류 C-P2
집합투자업자보수	0.40%	0.40%	0.40%	0.40%	0.40%	0.40%
판매회사 보수	0.60%	1.40%	0.03%	0.00%	0.60%	0.50%
신탁업자 보수	0.05%	0.05%	0.05%	0.05%	0.05%	0.05%
일반사무 관리보수	0.02%	0.02%	0.02%	0.02%	0.02%	0.02%
보수합계	1.07%	1.87%	0.50%	0.47%	1.07%	0.97%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및 비용	1.07%	1.87%	0.50%	0.47%	1.07%	0.97%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1.42%	2.22%	0.85%	0.82%	1.42%	1.32%
증권거래 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신설>

환매수수료

없음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0.6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생략,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C	종류 C-F	종류 W	종류 C-P	종류 C-P2
집합투자업자보수	0.30%	0.30%	0.30%	0.30%	0.30%	0.30%
판매회사 보수	0.20%	0.70%	0.03%	0.00%	0.40%	0.30%
신탁업자 보수	0.05%	0.05%	0.05%	0.05%	0.05%	0.05%
일반사무 관리보수	0.02%	0.02%	0.02%	0.02%	0.02%	0.02%
보수합계	0.57%	1.07%	0.40%	0.37%	0.77%	0.67%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및 비용	0.57%	1.07%	0.40%	0.37%	0.77%	0.67%
합성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0.92%	1.42%	0.75%	0.72%	1.12%	1.02%
증권거래 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table><tr><th>구 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 A</td><td>154</td><td>355</td><td>578</td><td>1,239</td></tr><tr><td>종류 C</td><td>146</td><td>349</td><td>507</td><td>977</td></tr><tr><td>종류 C-F</td><td>77</td><td>242</td><td>425</td><td>967</td></tr><tr><td>종류 C-P</td><td>115</td><td>362</td><td>634</td><td>1,444</td></tr><tr><td>종류 C-P2</td><td>105</td><td>330</td><td>578</td><td>1,315</td></tr><tr><td>종류 W</td><td>74</td><td>233</td><td>408</td><td>928</td></tr></table>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
	(신설)	**(7)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글로벌전술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종류(Class)		A	A-E	C1	C-E
가입자격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선취)		납입금액의 1.0%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보수(연, %)	판매	0.60%	0.30%	1.40%	0.50%
	운용	0.40%	0.40%	0.40%	0.40%
	신탁업자	0.05%	0.05%	0.05%	0.05%
	일반사무	0.02%	0.02%	0.02%	0.02%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1.07%	0.77%	1.87%	0.97%
	합성총보수비용	1.42%	1.12%	2.22%	1.32%

※ 주석사항

· 종류C2~C4, C-F, S, W, C-P, 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5시 이전 / 15시 경과후
환매방법 : 15시 이전 / 15시 경과후

보수

종류(Class)		A	C
가입자격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선취)		납입금액의 0.60%이내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연, %)	운용	0.30%	0.30%
	판매	0.20%	0.70%
	신탁업자	0.05%	0.05%
	일반사무	0.02%	0.02%
	기타비용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0.57%	1.07%
	합성총보수·비용	0.92%	1.42%

※ 주석사항

· 종류 C-F, W, C-P, C-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5시30분 이전 / 15시30분 경과후
환매방법 : 15시30분 이전 / 15시30분 경과후

<table>
<tr>
<td>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참조지수 : FTSE All World Index * 50% + Barcap Global Aggregate Bond Index * 40% + Morningstar Global Long/Short Equity Index * 10%

※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성과 비교를 위하여 FTSE All World Index * 50% + Barcap Global Aggregate Bond Index * 40% + Morningstar Global Long/Short Equity Index * 10%를 참조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 colspan="2">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td><td>50%수준</td><td>90% 이상</td></tr>
</table>
</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3) 참조지수 : 글로벌 주식 인덱스[1] x 50% + 글로벌 채권 인덱스[2] x 20% + 글로벌 헤지펀드 인덱스[3] x 30%
1)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2)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
3) Hedge Fund Research HFRX Equity Hedge Index x 95% + Call 5%

※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성과 비교를 위하여 금융시장 움직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롱숏전략 지수 중,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수를 당 펀드의 전략배분 비중으로 가중하여 참조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90% 이상</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탁[주식-재간접형]</td><td></td><td rowspan="4"></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40%수준</td></tr>
<tr><td>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td><td>10%수준</td></tr>
</table>
3. 운용전문인력
(생략)
</td>
<td>
<table>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 rowspan="2"></td></tr>
<tr><td>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td></tr>
</table>
※ 단, 위의 모투자신탁은 다른 모투자신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상기 투자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td>
</tr>
<tr>
<td>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td>
<td>
1.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연금외 수령시과세(부득이한 경우)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주석추가>
</td>
<td>
1.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연금외 수령시과세(부득이한 경우)
: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재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r>
<td>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td>
<td>
2. 전환절차 및 방법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생략)
</td>
<td>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td>
</tr>
</table>

<별첨 1>

[1] 투자대상

1)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변경 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변경 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변경 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사모사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변경 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

		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사모사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 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3.채권	5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어음	5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변경 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3.채권	5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어음	5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제한]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 전]

구분	내용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변경 후]

구분	내용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

	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변 경 대 비 표

1.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주요 변경내용: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3.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8. 하나UBS 글로벌전술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3항** 8. 하나UBS 코어셀렉션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하나UBS 글로벌전술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하나UBS 코어셀렉션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하나UBS 글로벌전술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3항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하나UBS 코어셀렉션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